**DEMO 평가 계약서**

경기도 평택시 진위산단로 75에 본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원익아이피에스(이하 “갑”이라 칭함)와 «거래처(을)주소»에 본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거래처(을)명»(이하 “을”이라 칭함)는 상호주의에 기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Demo(데모) 평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제공하는 «대상장비»(이하 “대상장비”)를 “갑”이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본 DEMO 평가 기간은 «계약시작일(발효일)»에서 «계약종료일»까지로 하며, 평가기간의 단축 내지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 간의 합의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단, 본 계약의 만료일 전에 본 계약상 평가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더 이상의 평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방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본 DEMO 평가는 “대상장비”의 구매와는 어떠한 상관 관계도 없으며, 본 평가 중 또는 종료 이후에도 “대상장비”의 구매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갑”이 서면으로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을”은 “갑”에게 “대상장비”의 구매를 요청 또는 강요할 수 없다.

**제3조 (계약의 해지)**

일방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게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할 경우 서면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타방당사자 또는 타방당사자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절차가 개시되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타방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법적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타방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한 영업 또는 자산의 중요 부분을 양도하거나 해산 결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는 경우
  4. 타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고 일방당사자로부터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2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DEMO 평가의 수행이 정지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DEMO 평가의 필요성이 소멸되는 등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을 “갑”이 판단하는 경우

**제4조 (평가업무의 수행)**

1. 양 당사자는 상호 간의 협의한 역할에 따라 성실히 각각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각 단계별 평가일정 및 평가역할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2. 본 계약상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일방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평가업무 수행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동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그러한 장애 요인을 해결하여 한다. 단,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그러한 장애 요인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일방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게 어떠한 계약 위반 책임 없이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중도 해제할 수 있다.
3. 양 당사자는 본 계약상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평가책임자를 각각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선임된 평가책임자는 평가업무의 진척상황 및 평가업무와 관련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양 당사자가 별도 합의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기술회의를 소집하기로 한다.
4. “갑”의 책임평가자: «책임평가자(갑)»
5. “을”의 책임평가자: «책임평가자(을)»

**제5조 (장비의 설치)**

본 계약상 평가업무를 위하여 “을”은 “갑”에게 “대상장비”를 무상 대여 제공 하기로 하되, 양 당사자가 별도 합의에 따라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상장비”를 운송, 설치하고, 그에 따르는 Utility 비용은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또한 “갑”과 “을”은 상호협의를 통해 본 계약상 평가업무를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실시권 허여)**

1. 일방당사자는 본 계약에 의거 타방당사자에게 본 계약상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비독점적, 비양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제 3자에 대한 재실시권 제외)을 허여하며, 타방당사자는 동 기술정보를 본 계약의 평가업무 수행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2. 일방당사자는 본 조에 의거 타방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자신의 기술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하자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7조 (기술지원)**

1. 본 계약상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방당사자가 필요한 기술정보 및 관련 기술자료를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타방당사자는 서면요청에 따라 기술정보 및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갑” 또는 “을”이 제공하는 기술정보 및 관련 기술자료는 본 계약에 관련된 공정기술 및 장비기술, 그 외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로 제한한다.
2. 전항의 기술지원을 위하여 “갑”이 “을”에게 숙련된 기술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무상으로 “갑”에게 그러한 기술자를 파견하여야 하며, 기술자 파견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들은 각각의 경우에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8조 (평가비용)**

1.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된 경우 “갑”은 “대상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력, 용수 등 관련 유틸리티 및 설치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설치된 “대상장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대상장비”의 평가를 위하여 “갑”에게 발생하는 인건비, 기술 지원 컨설팅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당해 비용 부담에 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상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장비”의 부품의 교환과 유지관리 및 Upgrade가 요구되거나, “대상장비”의 기계적, 화학적 또는 전자적 결함이 발생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접수한 즉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따른 “을”의 의무 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 결과의 오차 또는 지연에 관하여 “갑”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조 (보증)**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상 평가업무의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타방당사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본 계약상 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실시된 기술 회의 등에서 상호 합의된 회의 내용은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면책)**

각 당사자는 자신의 기술정보가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동 제 3자로부터 클레임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상대방을 면책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동 클레임 또는 소송을 방어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술공개)**

각 당사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에 직, 간접적으로 발생한 결과를 공개적으로 대외에 발표(구두 혹은 서면)할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반드시 본 기술평가가 “갑”과 “을”의 공동평가에 의해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또한 사전에 상대방에게 공개 내용의 전체를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존재사실, 그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모든 기술정보 및 관련 기술자료를 본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그 종료일로부터 1년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하지 못한다.

**제13조 (장비의 분리, 반출)**

본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 30일 이내에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 5조에 따라 설치된 “대상장비”를 설치장소로부터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단, 구체적인 일정과 작업 방법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는 자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타방 당사자가 입은 직접, 실질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불가항력)**

본 계약 체결 후 정부의 조치, 관련 법령의 개폐, 전쟁, 전쟁유사행위, 내란, 폭동, 혁명, 천재지변, 화재, 파업, 태업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이행이 방해 받은 당사자는 동 불가항력적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불가항력 사유가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일방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게 서면 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 (청렴의무)**

“을”은 “갑”이 윤리경영 선언과 윤리강령 제정 등을 통해 투명한 기업경영,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등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갑”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17조 (준법경영 준수의무)**

1. “을”은 본 계약 및 “갑”과의 거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비윤리적인 행위, 불법 행위, 편법 행위, 부정 행위 또는 일탈 행위 등(이하 총칭하여 “비윤리적 행위”)을 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만약 본 계약 기간 중 “을”이 “갑”의 임직원에 대하여 전술한 “비윤리적 행위”를 제안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갑” 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한 이후 자신의 재량에 따라 “을”에게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그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을”은 “갑”의 임직원이 당해 “비윤리적 행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러한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자신의 준법경영에 관한 정책 등을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갑”의 준법경영에 대한 준수의무에 동참하기 위하여 별첨1. [준법경영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기타)**

1. 본 계약 기간 동안 양 당사자의 공동의 노력으로 인하여 지적재산권이 발생한 경우, 공동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출원 여부 및 소유 관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2.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 자신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무를 대행케 하지 못한다.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사항은 수원지방법원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4.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 및 기명날인(또는 서명)으로 수정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1. 준법경영 실천 서약서

**«계약일자»**

|  |  |
| --- | --- |
| **갑: (주)원익아이피에스** | **을: «거래처(을)명»** |
| **주소: 경기도 평택시 진위산단로 75** | **주소: «거래처(을)주소»** |
| **대표이사: 변 정 우 «인(갑)»** | **대표이사: «대표자(을)명» «인(을)»** |